

인천광역시 조례 (공 포)

☐ 제 명 :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

☐ 개정사유

-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시행('14. 9. 25.)됨에 따라
- 시에서 출자·출연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근거를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출자·출연 기관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함(제5조제1항제6호)

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

2014년 12월 31일

인천광역시조례 제5418호

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.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.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